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폭피해자 및 친생자 장례비 등 지원〉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6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원폭피해자 및 친생자 장례비 등 지원	3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4. 16.
- (3) 회 부 일 : 2026. 4.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더하여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폭피해자의 자녀는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골수암, 갑상선질환 등 일부 질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및 돌봄 등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고,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및 복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원폭피해자 및 친생자 장례비 등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가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에 대해 장례비 지원 및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안 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원폭피해자의 친생자(이하 “친생자”)에게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u>의료</u>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피해자 등의 의료·장례·복지</u> ----- ----- ----- -----.
제12조(의료지원) ① (생략)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제12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행	개정안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u><신설></u>	----- -----말한다. 이하 같다----- -----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장례비지원)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제1항에 따른 장례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액 및 지급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3(복지지원사업)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2.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 4. 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u><신설></u>	

현행	개정안
<신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복지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2(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의 친생자에게 제12조,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사업 실시를 의무화하고(안 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친생자에게도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의료지원 및 개정안에 따른 장례비지원·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현재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한일(韓日)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지원·장례비지원·복지지원사업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원폭 피해자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음.

< 한일 정부 원폭피해자 지원현황 (2025년 기준) >

구분	한국정부	일본정부
지원대상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 1,589명 ① 건강수첩 소지자 : 1,560명 ② 건강수첩 미소지자 : 29명	① 건강수첩 소지자 : 1,560명
진료비	②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진료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① 건강수첩 소지자에게 1) 연간상한액(30만엔, 약 295만원) 이내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 전액 지원 2) 연간상한액 초과할 경우 일본의료 수가 재산정하여 지원
장례비	②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장례비 210만원 지원	① 건강수첩 소지자에게 장례비 219천엔(약205만원) 지원
건강검진비	②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연1회 35만원 지원	① 건강수첩 소지자에게 연1회 35 만원 지원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전원에게 매 월 10만원 지원(단, 합천원폭피해자 복지회관입주자는 5만원)	-
원호수당	-	4종 중 1종 수령(질병의 유무 및 경중에 따라 월정액 수령) - 의료특별수당(154,090엔, 약 145 만원) - 특별수당(56,900엔, 약 53만원) - 건강관리수당(37,900엔, 약36만원) - 보건수당(19,000엔, 약 18만원)
복지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전액 (국비 연 21억원)	-
도일 치료 (일본의료기관 방문)	-	희망자에 한해 지원
관련 근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재한원폭피해자지원사업 등 업무협약
연간소요액	약 46억원	약 178억원

주: ‘건강수첩’은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原子爆弾被爆者に対する援護に関する法律)」에 따라 피폭자 등으로 인정된 자에게 교부되는 건강수첩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 약 7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피폭자¹⁾ 중 2026년 현재 원폭피해자 생존자는 1,482명이며 원폭피해자의 자녀는 3,173명으로²⁾, 원폭 피해자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약 85세로 고령이며 그 자녀 또한 대다수가 장년·노년층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해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폭피해자 자녀가 일반인에 비하여 각종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폭피해자 자녀 역시 원폭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원폭피해자 2세는 일반국민에 비해 심근경색·협심증(남성 81배, 여성 89배), 우울증(남성 65배, 여성 71배), 빈혈(남성 88배, 여성 21배), 유방양성종양(여성 64배), 천식(남성 26배, 여성 23배), 정신분열증(남성 23배, 여성 18배), 위·십이지장궤양(남성 9.7배, 여성 16배), 갑상선 질환(남성 14배, 여성 10배), 간암(여성 13배), 백혈병(여성 13배), 뇌졸중(남성 6.1배, 여성 4배), 고혈압(남성 4.8배, 여성 3.5배), 대장암(남성 7.9배), 당뇨병(남성 3.4배, 여성 4배), 위암(여성 6.1배)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³⁾.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폭피해자뿐 아니라 그 자녀 또한 의료지원·장례비지원·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혜택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원폭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1)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당시 피폭자의 10%가 일제강점기 이주, 징병·징용으로 동원된 조선인으로, 조선인 피폭자의 수는 7만여 명으로 추정됨(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2023. 12.).

2) 생존자 수는 2026년 6월 기준(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대한적십자사 등록 기준)이며, 자녀 수는 2026년 3월 기준((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임.

3)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2023. 12. 재인용

□ 다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원폭피해자의 자녀를 “친생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4)상 친생자는 혈연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친생자임에도 혈연관계가 없거나 친생자가 아님에도 혈연관계가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원폭 피해의 유전적 영향을 고려하여 원폭피해자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에게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점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친생자” 대신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45억 2,820만원(연평균 49억 56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⁵⁾.

4)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원폭피해자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지 않았으며,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 중 장례비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추계한 것임(국회예산정책처, 추계번호 26C2298, 회답일 2026. 7. 3.).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국가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다만, 안 제14조의3은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09